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1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6.

발 의 자 : 한민수 · 이정현 · 이연희
송옥주 · 박상혁 · 황 희
문진석 · 임오경 · 박균택
손명수 · 허 영 · 이주희
이해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 및 조정부회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이 요구됨.

최근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및 사건 적체 심화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상임위원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 -----.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 ----- -----. 1. -----상임위원 2인 ----- ----- ----- 2. -----상임위원 1인----- ----- ----- ----- ② -----상임위원이----- --.

<u>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u>	<u><삭 제></u>
<u>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 원</u>	<u><삭 제></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